2024. 1. 22.(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02-2133-6305
공익활동지원팀장	윤준호	02-2133-6325
담당자	박현규	02-2133-6330
관련 누리집	*서울시누리집(https://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행정 - 기획행정-시민협력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8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회문제 해결 위한 6개 분야 우수한 공익활동 선정하여 총 15억 원 규모 지원
- 단체역량 반영 · 성실단체 참여 제고 · 자부담 의무화 등 단체의 책임성 확보
- 참여단체 사전교육 이수 및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실적 평가 등 체계적 사업관리
- 2.1.~2.15. 접수, 3.21. 선정단체 발표…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 참여 기대

□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 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 · 체육, 교통 · 안전, 환경보전 · 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사업은 동행 · 매력 · 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 · 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 · 독창성 · 파급효과 및 신청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① **(단체역량 심사반영)**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② **(성실단체 참여 제고)**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부담 비율 의무화)** 자율적인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도입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

□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비율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 공모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1일 서울시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다.

□ 공모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 자료(영상 · 문서)를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모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
유튜브 :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검색

□ 선정된 단체의 실무 및 회계책임자는 사업 착수 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한편, 올해에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용역 과업을 확대하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 역량교육, 최종평가 및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는 견실한 사업수행 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를 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 · 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

붙 임	2024년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호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접수마감일(2024. 2. 15.)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사업유형		사업내용(예시)
동행특별시	복지·건강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복지 증진 ·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회통합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계층간 갈등해소 등 · 부정부패 감시 등 반부패문화 정착운동
매력특별시	민생경제	· 청년취업·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 ·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예산낭비 신고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화관광·체육	·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서울 관광 명소 알리기 ·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활동
안전특별시	교통·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 불감증 해소, 생명존중 확산
	환경보전·자원절약	·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4. 사업신청 및 지원규모

○ 사업신청 : 1개 단체당 1개 사업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별 3,000만원 이하(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규모 결정)

- 자부담은 보조금의 7% 이상 의무 편성(10% 이상 5점 가점 부여)

심사배제 대상(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서울특별시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연속으로 서울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7% 미만 부담단체가 신청한 사업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2023년까지는 심사점수가 70점 미만 단체 미선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시·도, 다른 부서, 자치구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5.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4. 1. 25.(목) 14:00

○ 방　　법 :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 게시

-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시민협력 – 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
- 유튜브 :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검색

○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2. 1.(목) ~ 2024. 2. 1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인터넷 접수 (링크클릭 시 이동)

①〔회원가입〕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회원가입

②〔사업신청〕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 보조사업 예치유형 : 비예치형, 선택사유 : 서울특별시 공고 사항

※ (참고자료) ① 보탬e 교육 교재, ② 보탬e 유튜브 영상교육 (링크클릭 시 이동)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660-1390 (평일 09:00 ~ 18:00)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15.)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권장

7. 사업기간 및 신청서류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 제출서류

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등은 대상 아님)

8. 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방법 : 최근 5년간 지원 여부에 따라 기존, 신규 단체로 구분 선정(비율은 위원회에서 정함)

○ 선정기준 : 단체 역량, 사업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분 야	심사항목	100	심사내용
단체역량	전문성·책임성	15	전담인력 확보 및 단체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등
	공익활동 실적	5	최근 3년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사업내용	공익 적합성 등	20	단체 설립목적 및 공익성 적합 여부,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
	사업의 독창성	20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등
	사업문제 해결	15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추진방법 및 외부자원 연계성 등
	파급효과	15	수혜범위 적절성, 주민욕구 반영 여부, 서울시 전역 파급 가능성 등
예 산	예산 타당성	10	지원요구액 적절성, 인건비와 사업비 적절성 및 건전성 등
가점 사항			전년도 사업 탁월 단체 가점(5점), 의무적 자부담 비율 10% 이상 가점(5점)

선정심사 고려사항

- ㅇ **다양한 단체와 사업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ㅇ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업 선정 제외**
- ㅇ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선정 제외**
- ㅇ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2023년까지는 심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단체 미선정
- ㅇ **가감점 사항**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탁월** 단체는 **5점** 범위 가점 부여(미흡 단체는 지원 제외)
  -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10% 이상 5점 가점 부여
    (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 전전년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누리집,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공개 시 0점,
    미공개 시 2점 감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미수행 단체는 0점 처리
    (※ 단, 전전년도 평가결과의 미공개에 대한 감점은 2025년부터 적용)

ㅇ 결과발표 : 2024. 3. 21.(목) 예정 (※ 발표 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누리집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보조금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ㅇ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신규 개설

ㅇ 보조금은 사업기간 동안 두 차례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ㅇ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에 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중간평가(서면・현장조사) 결과 미흡 단체는 2차 교부를 중단하고 미흡사항 보완 후 교부

ㅇ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기타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

ㅇ 부정수급 행위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과금 징수, 벌칙(징역, 벌금) 부과 등의 조치 가능

ㅇ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는 미지원(사업비만 지원)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ㅇ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행사 개최 시 서울시 후원을 표시할 경우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절차」 준수(서울시 사전 검토·승인 후 사용)

ㅇ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